

「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(정정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156호(2025. 10. 16.)로 「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된 지형도면에 오기가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, 같은 법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 : 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3-1번지 일대
- 면 적 : 7,376.56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조합명칭 : 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용수)
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2-176

4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- 준공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-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5. 조합설립인가일: 2025. 10. 16.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행위제한 구역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3-1번지 일대

나. 행위 제한

–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1항

다. 행위제한 시행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의3(행위제한 등)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시행

7. 지형도면(정정)

기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항9호 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에서 동법 제2조제1항4호에따른 ‘사업시행구역’으로 정정

